

교토의정서 발효, 민관합동 대응 본격 착수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교토의정서 발효 관련 발표를 통해,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추진 등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수소경제 혁명에 대비하여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여 업종별·기업별 DB를 구축(05년말)하는 등 통계체계를 정비하고, '05년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저감잠재량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 협상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개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92.6월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94.3 발효)

한국 : '93.12월 비준

- **공통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책의 자체적 수립·시행 +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제출

- **특정의무:** 부속서Ⅰ, 부속서Ⅱ 국가로 구분 (한국: 비부속서Ⅰ)
- 부속서Ⅰ(40개국과 EC): '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수준으로 안정화(비구속)
- 부속서Ⅱ(부속서Ⅰ 국가중 24개국+EC):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

교토의정서는 '97.12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선진국 (한국 미포함)의 구속적 감축 의무를 규정한 합의 문서 ('05.2.16발효)

* '05.2월 현재 136개국 비준, 비준국의 CO₂ 배출량이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61.6%

* '05.2.16일 발효는 러시아(17.4%, '90)의 비준('04.11.18) 결과

- **감축대상 온실가스:** CO₂, CH₄, N₂O, PFCs, HFCs, SF₆ 등 6개 규정

- **의무부담 내용:** 선진 38개국(부속서Ⅰ 중 터키, 벨라루스 제외)은 제1차 이행기간('08~'12)동안 '90대비 동 의무 부담국가 전체 평균 5%를 감축

[국가별로 차별화(△8~+10)]

* EU: △8%, 미국: △ 7%, 일본: △6%, 러시아: 0%, 아이슬란드: +10%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카니즘 도입

- **배출권거래제 :**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Emissions Trading)
- **청정개발체제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 :**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투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

- 의정서에 비준한 35개 선진국(한국 제외)은 '08~'12기간 동안 '90년 대비 의무부담 국가 평균 5%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 이행 시작(국가별로 감축 목표는 상이)

※ 교토의정서상 규정된 의무부담 국가는 38개국(한국 제외)이나 이중 미국, 호주, 크로아티아는 비준을 하지 않아 이행의무 없음

※ 국가별 감축량 : EU -8%, 미국 -7%, 일본 6%, 러시아 0%, 호주 +8%

-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하여 2005년중 교토체제('08-'12)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

※ 교토의정서(제3.9조)는 선진국의 제2차 이행기간 ('13 ~ '17)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을 2005년부터 시작할 것을 규정.

※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EU는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국, 호주 등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 인도, 한국 등을 포함한 주요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주장. 앞으로의 의무부담 논의에는 개도국이 포함될 전망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고 청정개발체제(CDM)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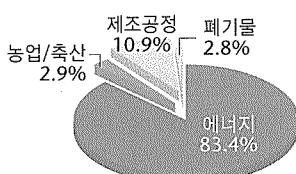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 현황: '90-'02까지 연평균 5.1% 증가

- 에너지부문(83.4%)과 제조공정(10.9%)에서 대부분 배출
 - 에너지연소 기준으로 세계 9번째 온실가스 배출국
-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너지) : 2020년까지 연평균 2.3%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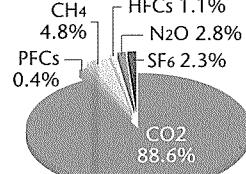
구 분	'90	'95	'99	'00	'01	'02	'90-'02
1차에너지수요 (천TOE)	93,192 (100)	150,437 (161)	181,363 (195)	192,887 (207)	198,409 (213)	208,636 (224)	6.9
온실가스 배출량 (천TC)	84,738 (100)	123,445 (146)	135,542 (160)	144,259 (170)	148,038 (175)	154,724 (183)	5.1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인)	1.98 (100)	2.74 (138)	2.91 (147)	3.07 (55)	3.13 (158)	3.25 (164)	4.2
온실가스/GDP (tC/백만원, '95)	0.322	0.327	0.309	0.301	0.300	0.295	- 0.7

* ()내는 1990년 수치를 100으로 할 때의 지수, TC : Tons of Carb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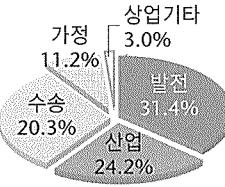
부문별 배출현황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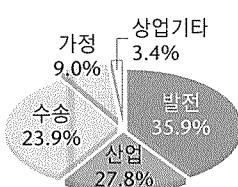
가스별 배출현황 ('02)



2002년



2020년



국내에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 생긴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신설과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3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환경무역장벽 등으로 환경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전문적인 환경컨설팅회사의 도움이 절실히, 국내는 경영컨설팅분야만 활성화되어 있을 뿐, 환경컨설팅은 그 인식조차 희박하여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컨설팅 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부수적으로 환경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컨설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로 아서더리틀(Arthur D. Little), 이알엠(ERM) 등 전문업체들이 상당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의 등장을 촉진, 환경컨설팅이 국내에서도 명실공히 컨설팅의 한 전문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환경전문고급인력의 고용을 확대시키며, 등록업체에 대한 공신력 부여로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환경컨설팅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장벽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컨설팅회사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

환경컨설팅의 주요사업내용

-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안 제시
- 조직의 환경성을 분석하여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공
-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환경영행정절차의 대행서비스 제공
- 환경산업체 창업 및 운영, 인수·합병 등 컨설팅
- 환경오염의 예방 및 최적처리 관련 컨설팅
- 환경영향 및 환경기술 관련 컨설팅 등

록하도록 하였고, 환경컨설팅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기본적 사항과 함께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중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으로 정착시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며, 동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국무회의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